

학생 징계 규정

제정 1994. 07. 25.

제4차 개정 2019. 06. 25.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48조에 의하여 상지대학교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00.10.24)

제2조(학생징계위원회 구성) ① 학생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소속 대학장, **학생행복처장**, 학과(학부)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6.25)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행복팀장** 또는 담당과장이 한다. (개정 2017.12.05., 2019.06.25)

③ 위원회는 총장의 징계의결 요청으로 개최되며, 심의 의결과 동시에 종료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초의 회의는 **학생행복처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회의를 주재한다.(조 신설 2000.10.24.) (개정 2019.06.25)

제3조(징계제청 및 분리조치) ① **학생행복처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징계위원회에 징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징계혐의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05., 2019.06.25)

1. 사건 경위서
2. 징계혐의자의 진술서
3.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
4.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5.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조 신설 2000.10.24.)

② 학생간의 폭력행위나 성관련 비위행위 또는 그 밖의 비위행위로 당사자인 학생들의 교내 활동이 중복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학생지원처장**은 수강과목의 재배정 및 수업분리 등 교내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신설 2017.12.05.) (개정 2019.06.25)

제4조(징계절차) ① 총장이 학생을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의한 징계의 종류 또는 내용에 가중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조 개정 2000.10.24)

제5조(학생의 진술)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징계심의 대상이 된 학생에게 징계 심의에 회부된 사실 및 출석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 대상이 된 학생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 대상이 된 학생이 출석 또는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조 개정 2000.10.24)

제6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 근신은 7일 이하의 확정기간, 유기정학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확정 기간을

정학기간으로 정하여 이를 처분한다.(개정 2017.12.05.)

③ 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협의자의 소행, 학업성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조 개정 2000.10.24)

제7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조 신설 2000.10.24)

제8조(징계의 사유) 학칙 제48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양정한다.

- 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졸업자격시험 등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과목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 ② 학교 내에서 음주를 하고, 소란한 행위를 한 자
- ③ 학교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자
- ④ 학교에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하게 한 자
- ⑤ 교직원에 대하여 학생의 신분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모욕, 폭행 등의 비도덕적 행위를 한 자
- ⑥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자(개정 2017.12.05.)
- ⑦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⑧ 기타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조 신설 2000.10.24)

제9조(징계처분) ① 총장은 징계의결에 관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 보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에 대하여 제1항에 있는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고, 당해 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 개정 2000.10.24)

제10조(징계기간 중 학생활동 제한) ①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해당 소행에 대한 개전을 위해 반성을 하여야 하며 그 지도교수와 소속 학과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근신기간 중 교과목에 관한 강의 수강 이외의 학생활동을 할 수 없다.
③ 유기정학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정학기간 중에는 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개정 2017.12.05.)
④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를 거부하거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당해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조 개정 2000.10.24)

제11조(징계해제) ① 총장은 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유기정학의 경우 정학기간의 3분의 1이상의 기간과 무기정학의 경우 2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도교수 및 학과(학부)장의 건의에 따라 충분히 개전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 개정 2000.10.24)

제12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조 신설 2000.10.24)

부칙

이 규정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부-501, 2017.12.05.)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